#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하 남 시 의 회

###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

발의년월일 : 2015. 10.

발 의 자:오수봉 의원(인)

#### 1. 개정이유

○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기구의 수리비용 지원기준을 변경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.

#### 2. 주요내용

-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기준을 변경함
  - 차상위계층 : 수리비용의 2분의1을 연간 10만원 이내⇒수리비용을 연간 15만원이내(안제5조제2항제2호)
  -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외 : 수리비용의 2분의1을 연간 10만원 이내 ⇒수리비용을 연간 10만원이내(안제5조제2항제3호)
- 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- 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- 5. 관계법령 발췌서 : 덧붙임
- 6. 예산수반 사항
- 7. 입법예고 결과
- 8. 부서협의 결과
- 9. 기타 참고사항

##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제2호 중 "차상위계층 및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연간 10만원 이내에서"를 "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리비용을 연간 15만원 이내에서"로 한다.

제5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수리비용을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현 행  제5조(수리비용 지원기준) ①~② (생략)  1. (생략) 2. 「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<u>차상위계층 및</u>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수리비 용의 2분의 1을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  〈신 설〉	제5조(수리비용 지원기준) ①~②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 <u>차상위계층에 해당</u> 하는 사람은 수리비용을 연간 15만원 이내 에서
	<u>수 있다.</u>

#### 관련법규

#### 장애인복지법

- 제66조(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·대여 또는 수리하거나 장애인보조기구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.
  - ②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은 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 또는 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다.
  - ③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, 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·대여·수리 및 비용지급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〈개정 2008.2.29., 2010.1.18.〉